

권리장전 공표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권리장전」은 '세계인권선언'서문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 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한다는 기본 명제 에 더하여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 이론과 과학적 방법을 탐구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인류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자유와 권리의 보호, 불합리한 처분 거부 등의 학습권 향상만을 위한 편향적인 장전이 아닌 개개인 스스로가 연구공동 체임을 자각하고 연세대학교의 교육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취하여야할 의무를 병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세대학교 미래의 학문과 지식을 이끌어 나갈 소중한 학문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지시키고자 이 권리장전을 선포한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권리장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연세대학교 대학원 권리장전은 대학원 구성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개인 존엄권, 자기 결정권, 학업연구권 등의 불가침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대학원생의 의무를 제시함으로서 학내 공동체의 연구 문화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이루고자 한다.

제2조(정의)

- ① 본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이라 함은 연세대학교 학칙 제2조(교육조직)내 일반대학원내 개설된 모든 전공을 말한다.
- ② 대학원생이라 함은 위 1항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을 말한다.
- ③ 교육 및 연구라 함은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상태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의 강의 수강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
- ④ 연구실적물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 대학원생이 학위 과정 수행중 달성한 모든 연구관련 실적물을 말한다.
- ⑤ 이하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연세대학교 학칙 및 각 대학원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 통념상의 정의로 한다.

제3조(적용 조건 및 대상)

- ① 본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입학부터 졸업,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학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된다.
- ② 교수 및 직원 그리고 학부생 등 연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본 권리장전을 통해 대학원생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4조(개인 존엄권)

- ① 대학원생은 연세대학교 연구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을 통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인격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
- ② 대학원생은 연세대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수 및 직원 그리고 학부생 등 모든 구성원과 상호 동등히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연세대학교는 대학원생 개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 ③ 대학원생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④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및 인종, 나이, 장애,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성향 등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아니 한다.

제6조(학업연구권)

- ① 대학원생에게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대학원생은 학 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 분야에 대해 전문적이고 적절한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실적물 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제8조(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대학원생은 논문 예심·본심사, 졸업시험 등을 포함한 학위취득에 관련된 심사 일체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활동에 대해 학교 당국으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학교 당국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10조(조교의 권리)

-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선발되는 과정에서 선발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다.
- ② 학교 당국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 및 인건비 지급 전반 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 ② 대학원생은 학과전공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12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대학원생은 성별이나 성적 정체성에 관계없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대학원 내에서 일 어나는 모든 성 폭력적 상황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
-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 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이 그 사유가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반절차에 따른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변경과정, 혹은 지도교수 변경 이후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차별 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휴식과 안전에 대한 권리)

- ①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병결, 휴학 등의 절차에 불이익을 받아 서는 안 되며, 연구 활동 중 충분한 휴식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 당국은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5조(연구공간 및 기타 시설 이용 등에 관한 권리)

- ①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 할 권리가 있다.
- ② 대학원생은 육아, 보육 등과 관련된 적절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3장 대학원생의 의무

제16조(구성원으로서의 의무)

- ① 대학원생은 연세대학교 연구공동체 일원으로서 상호간 미래의 학문과 지식을 이끌어 나갈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지하여야 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 ② 대학원생은 학칙 및 제 규정(내규)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연세대학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대학원생은 별도로 지정하는 대학원생 명예 선언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7조(학업 및 연구)

- ① 대학원생은 본분인 학업 및 연구의 수행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며, 학문적 위상을 높이 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학원생은 학생 지도상 다른 학생에게 악역향을 끼치지 않을 의무,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 위로 수업 또는 학사행정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의무, 원내 면학 분위기를 조 YONSEI, GRADUATE CONTROL

Leading the Way to the Future

성할 의무가 부여된다.

③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시설사용 및 안전)

모든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학내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제4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9조(기구운영)

- ① 학교 당국은 교직원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권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교 당국은 그 외 대학원생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청취하여 줄 수 있는 교내 상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 당국은 위 인권센터와 교내 상담시스템에 대한 모든 대학원생의 이용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문제제기 및 해결)

- ① 대학원생은 본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학교 당국에 그 침해사실에 대한 부당함을 통지하고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있다.
- ② 대학원생은 문제제기를 함으로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되며, 학교 당국은 관련 기구를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기타)

- ① 연세대학교 모든 구성원은 본 권리장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 ② 본 권리장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칙 및 각 대학원 학칙, 제규정을 준용한다.
- ③ 단, 본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2017년 11월 22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대학원 원주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명예 선언문

나는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지성인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1. 나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본분인 학업 및 연구 수행에 성실히 임한다.
- 2.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3. 나는 대학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학교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나는 위의 대학원생 명예 선언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대학원 총학생회

대학원 원주 총학생회



